

도시관리계획(미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미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미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아래 참조
 나.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하남시청 도시정책과(☎ 031-790-5444)

2026. 7. 16.

하 남 시 장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25	녹지	완충 녹지	하남시풍산동 569 일원	18,792.4	감)199.8	18,592.6	국토부고시 제2009-936호 (2009.09.28.)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5	녹지	◦ 면적 변경 - 18,792.4㎡ → 18,592.6㎡(감199.8㎡)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완충녹지 변경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6	미사 숲공원	근린 공원	하남시풍산동 537일원	155,522.1	감)441	155,081.1	국토부고시 제2009-936호 (2009.09.28.)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미사숲공원	면적 변경 - 155,522.1㎡ → 155,081.1㎡(감441㎡)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변경 - 진출입로 계획: 소로2류(B=8m, L=55m)

나.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000	8	국지도로	55	풍산동 537	풍산동 537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소로 2-000	· 연장 : 55m · 폭원 : 8m	·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진출입 도로 신설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유통 및 공급시설용지 (변경)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²)		
열1	-	기 정	39,822.6	-	기 정	39,822.6	감) 1,721.23
		변 경	38,101.37		변 경	38,101.37	

나. 복합체육용지 (신설)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가. 위 치	면 적(m²)	
계		1,921	—	1,921	—
복합1	—	1,921	—	1,921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변경)

가.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1) 복합체육용지

위 치 (가번)	구 분		계획내용
복합1	도면표시		복합
	용도	허용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바, 아, 자, 파, 하목의 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6.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